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8월 12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

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가로구역 면적은 시·도 조례에 따라 1만3천제곱미터까지 설정 가능하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가로구역-사업시행구역 면적간 상한을 일치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 확대(안 제3조제1항제2호)

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·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을 1만3천제곱미터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

3. 의견제출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→ 정책자료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·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이유)

현행	개정안	의견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·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

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

- 전화번호: 044)201-4944, 4942